

**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(김홍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135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	2022. 11. 29.
발 의 자	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 의원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·통보된 의정비와 「지방자치법」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 변경

- 2023년 : 2022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(동결)
- 2024년 ~ 2026년 :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(동결)

나. 여비지급 기준 근거 변경 : 별표 5 → 별표 6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11. 25. ~ 2022. 11. 3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.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.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2023년도 월정수당: 월 1,899,500원
2.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: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(동결)

제7조 중 “별표 5”를 “별표 6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2019년도 월정수당: 월 1,798,910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: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</p> <p>제7조(여비지급 기준)</p> <p>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<u>별표 5</u>에 따라 지급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2023년도 월정수당: 월 1,899,500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: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 (동결)</p> <p>제7조(여비지급 기준)</p> <p>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<u>별표 6</u>에 따라 지급한다.</p>